

녹색제품 우선구매

- **관련근거** : 「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」

- **녹색제품** :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 17조 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상품 및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3조 및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제15조에 따라 재활용 제품의 품질 인증을 받은 상품

- **적용대상** : 국가기관, 지자체, 공공기관 등

- **2018년도 구매 실적**

단위 : 천원

연 도	구매액
2018	1,115

